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안영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62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안영호, 강혜순, 정재환,  
 홍영진, 박경흠

##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개방공간의 범위 등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라.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아.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차.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시설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15 ~ 제16조)
- 카.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규

22 (제281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6. 3. 11. ~ 3. 18.(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희공간을 말한다.
3. “공공시설 관리자”란 해당 공공시설의 장 또는 그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개방공간의 운영시간은 시설의 특성, 보안 및 안전관리,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운영기준으로 정하되,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신청, 승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개방공간 이용 신청 및 승인
2. 이용 가능 공간, 이용 시간, 사용료 등의 안내
3. 사용료 납부 및 반환
4. 이용 이력 관리 및 통계 분석

24 (제281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5. 그 밖에 개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 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개방 가능 요일 및 시간
2. 이용 대상 및 우선순위
3. 사용 제한 사항
4. 예약 가능 횟수 및 취소 기준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 ① 구청장은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스템 장애 및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시 사용시간, 준수사항, 사용료 납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구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행사
2.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활동
3.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4. 그 밖의 주민 모임 및 행사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공공질서·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또는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목적이거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긴급한 공공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구청장은 개방공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또는 구의 사정으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용자는 개방공간 이용 중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관리자의 책임)**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 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 시설의 유희공간 이용 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접수, 처리, 서비스 통계, 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3년**

※ 정보제공 동의 해지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상기 명시한 정보보유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취급이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작성자

- 소 속: 회계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정보영
- 연락처: 290-3912